

보도시점

2025. 6. 29.(일) 11:00
6. 30.(월) 조간

배포

2025. 6. 27.(금) 16:00

농어촌상생협력기금, 농촌의 위기를 기회로!

- 호반그룹,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통해 농촌으로의 체류인구 유입 도와
- 더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기금 참여 필요

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(FTA) 비준 당시 농어촌·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민간기업과 농어업인·농어촌 주민 간의 상생 협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, 2017년부터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되고 있다.

기업과 공공기관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은 농어촌학교에 교육프로그램 및 기자재 지원을 통한 다양한 교육의 기회 확대, 의료서비스 및 문화생활 지원을 통한 복지 개선, 주거환경 및 경관 개선을 통한 삶의 질 제고 등 농어촌에 선한 영향력을 불어넣으며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.

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우수 출연기업의 대표적 사례로 호반그룹을 들 수 있다. 호반그룹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, 재난 복구 지원, 문화복지 지원, 농산물 소비 촉진 등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면에 기여하고 있다.

지역경제 활성화 사례로는 창녕군과 협업하여 추진한 ‘농촌지역 경제살리기 프로젝트’가 있다. 농촌 빈집을 활용하여 청년 외식창업공간을 조성하는 창녕군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작년부터 4개월 간 청년 외식창업공간(창녕군 이방면 안리마을) 주변 길을 조성하고, 창업 공간 내 조명 설치 및 조경 식재 등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.

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4명의 청년들이 올해 2월 조성이 완료된 외식창업 공간에서 4월 1일부터 지역특산물인 양파, 마늘을 활용한 요리를 선보이고 있다. 창녕군은 현재까지 약 4만 4천 명이 청년 외식창업공간을 비롯한 주변 관광지를 찾아왔고, 올 한해 약 15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.



< 창녕군 안리마을 >

호반그룹은 '23년 4월 대형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을 지원하고 '24년 폭우로 인해 피해를 본 배추농가를 지원하는 등 재난 복구에도 힘써왔다. 특히, 산불로 삶의 기반을 잃은 이재민 대상으로 긴급구호물품을 지원(홍성)하고, 임시 거주용 조립주택 10동을 지원(강릉)하는 등 재난 극복에 앞장섰다.

또한, 지역 소상공인 매장 영수증으로 관람이 가능토록 한 ‘대한민국 상생 영수증 콘서트’를 공동 개최('23.8월, 제천)하는 등 문화 복지에도 관심을 가졌다. 1만여 명 관람객 중 65% 이상이 타 지역에서 참여하고 총 12억원 규모의 소비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.

아울러,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'24년 강원도와 제주 지역의 감자, 양배추, 당근 등 제철 농산물 꾸러미 나눔 및 시식 행사를 개최하기도 하였다. 현장에는 3천 명 이상이 방문하고, 유튜브 콘텐츠 조회수는 100만 회를 넘어서는 등 지역 농산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.

현재까지 354개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에 참여하고 있으며, 조성된 기금은 농어촌 주민의 수요를 바탕으로 농어업인 자녀 교육·장학 사업, 농어촌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·활성화 등을 위해 지원되고 있다.

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“농어촌상생기금의 출연은 단순한 기부 활동이 아니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, 앞으로 더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참여를 통해 농촌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.”라고 밝혔다.

붙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개요

담당 부서	농식품부 농촌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영수 (044-201-1511)
		담당자	사무관	이아름 (044-201-1518)
담당 기관	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 농어촌상생기금운영본부	책임자	부 장	정재인 (02-368-8951)
		담당자	과 장	나정준 (02-368-8954)

□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개요

- (추진배경) 한·중 FTA 비준 동의 시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여야정합의('15.11.30)에 의해 도입('17.3.30)
- (근거법령) 「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(이하 FTA농어업법)」 제18조의2
- (기금용도) 조성된 기금은 농어촌 교육·장학, 복지증진, 지역개발 및 활성화, 농수산물 생산, 유통, 판매 등 분야 공동협력 등 사업에 사용
- (운영조직)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
- (인센티브) 세제혜택(법인세액 공제 등), 동반성장지수·평가 반영, 홍보
 - (세제) 기부금 손금 산입(법인세법 제24조), 출연금 10% 법인세액 공제(조특법 제8조의3), 투자·상생협력촉진세제 공제(조특법 제100조의32)
 - (동반성장지수·평가) 기금 출연규모·증가율 등을 민간기업·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* 점수에 반영
 - * 우수기업 혜택: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, 조달청 공공입찰 가점, 출입국 우대 등
 - (홍보 등) 상생협력 우수사례 언론홍보, 기부금품 등에 기업 로고 표시, 출연 우수기업에 대한 정부 포상 등

※ 주요 사업사례

- 대학생 멘토링 활동을 통해 농어촌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등 도농 지역간 교육 격차 완화(서부공감 위피스쿨 등)
-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과 자립 도모 (보금자리 주거개선 사업 등)
- 농촌 지역 스마트팜 시설 조성을 지원하고 청년 스마트 농업인 육성(민관학 협업 청년 스마트팜 농업인 육성 등)
- 지방소멸 및 폐교 위기 지역 소생을 위한 빈집 리모델링(농촌 빈집 재생 프로젝트)
- 농어촌체험휴양마을과 워케이션을 연계하여 워케이션 활성화(농어촌워케이션 지원)